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I. 시험개요

1 선발예정인원: 총 3,814명

가. 법무분야: 서류전형(시·도 소방본부), 면접(소방청 일괄 시행)

나. 항공(조종, 정비, 운항관제)분야: 소방청 별도 공고 예정

시도	총계	공개경쟁채용(이하 '공채')		경력경쟁채용(이하 '경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양성
합계	3,814	1,947		1,867		
		1,820	127	1,358	304	205
중앙	38	-	-	38	-	-
서울	572	315	31	192	26	8
부산	154	67	8	55	21	3
대구	216	137	15	46	17	1
인천	162	86	8	60	7	1
광주	88	41	3	39	4	1
대전	62	25	2	24	7	4
울산	50	28	2	17	3	-
세종	35	18	-	12	5	-
경기	684	248	6	234	103	93
강원	124	70	5	28	5	16
충북	250	92	5	115	26	12
충남	283	145	9	116	7	6
전북	183	85	5	69	13	11
전남	214	60	5	106	15	28
경북	175	116	5	40	14	-
경남	336	219	12	77	20	8
제주	93	31	4	40	7	11
창원	95	37	2	50	4	2

- 1)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는 다른 시·도로 전보(인사교류 등)가 제한될 수 있음
- 2) 채용분야, 응시요건 및 선발예정인원은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학교(이하 "시·도 소방본부"라 한다)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소방청 및 119고시 (<http://119gosi.kr>) 누리집(이하 "119고시"라 한다)을 통하여 재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별 현황

※ 채용분야 기준 가나다순 정렬

구분		계	중 앙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창 원	
합계		3,814	38	572	154	216	162	88	62	50	35	684	124	250	283	183	214	175	336	93	95	
공채 소계		1,947	-	346	75	152	94	44	27	30	18	254	75	97	154	90	65	121	231	35	39	
경채 소계		1,867	38	226	79	64	68	44	35	20	17	430	49	153	129	93	149	54	105	58	56	
경채	건축	19					1				4		9		1		4					
	구급	1,018		150	62	39	54	25	25	8	17	240	20	44	56	40	82	35	61	30	30	
	구급상황관리	2									2											
	구조	397	28	38	6	16	10	4	5	8		97	3	42	13	22	37	10	26	12	20	
	구조(수난)	1										1										
	기계	1												1								
	법무	7			1				2			2			1	1						
	소방(자격)	25										15							10			
	소방(학위)	129		25	3	5		5		4		20	3	24	17	12	4			3	4	
	소방정(기관사)	5										2			1	2						
	소방정(항해사)	6										2			1	2					1	
	심리상담	6					1					2			1					2		
	안전관리(가스)	1													1							
	안전관리(예방)	2											2									
	안전관리(화재조사)	4		4																		
	언론공보(콘텐츠제작)	1														1						
	언론공보(홍보)	1														1						
	의무소방전역	16											4	12								
	자동차운전	75						6				15	5	12	30		4	3				
	자동차정비	26		2	3					1			10			4	1	2	1		2	
	전기	19		1						2			5			1	2	6			2	
	정보통신	30			2								6	1	9		2	6			3	1
	정보통신(빅데이터)	2															2					
	항공(운항관제)	3		1		1								1								
	항공(정비)	9				1	1	1						3	1		1			1		
	항공(조종)	28			2	2	2	1					3	6				2	5	3	2	
	화학	33	10	5					1				5				4	6			2	

2 공채분야 성별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947	346	75	152	94	44	27	30	18	254	75	97	154	90	65	121	231	35	39
남성	1,820	315	67	137	86	41	25	28	18	248	70	92	145	85	60	116	219	31	37
여성	127	31	8	15	8	3	2	2	-	6	5	5	9	5	5	5	12	4	2

3 경채분야 계급 및 성별 현황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계	1,867	38	226	79	64	68	44	35	20	17	430	49	153	129	93	149	54	105	58	56
건축	19						1				4		9		1			4		
소방사	19						1				4		9		1			4		
남성	8												7		1					
여성	2												2							
양성	9						1				4							4		
구급	1018		150	62	39	54	25	25	8	17	240	20	44	56	40	82	35	61	30	30
소방사	1018		150	62	39	54	25	25	8	17	240	20	44	56	40	82	35	61	30	30
남성	744		130	42	24	47	22	18	6	12	140	15	26	51	30	67	21	43	23	27
여성	274		20	20	15	7	3	7	2	5	100	5	18	5	10	15	14	18	7	3
구급상황관리	2										2									
소방사	2										2									
양성	2										2									
구조	397	28	38	6	16	10	4	5	8		97	3	42	13	22	37	10	26	12	20
소방사	397	28	38	6	16	10	4	5	8		97	3	42	13	22	37	10	26	12	20
남성	394	28	38	6	16	10	4	5	8		94	3	42	13	22	37	10	26	12	20
여성	3										3									
구조(수난)	1											1								
소방사	1											1								
남성	1											1								
기계	1													1						
소방사	1													1						
양성	1													1						
법무	7			1				2			2			1	1					
소방경	7			1				2			2			1	1					
양성	7			1				2			2			1	1					
소방(자격)	25										15							10		
소방사	20										10							10		
남성	8																	8		
여성	2																	2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양성	10										10									
소방장	5										5									
양성	5										5									
소방(학위)	129		25	3	5		5		4		20	3	24	17	12	4			3	4
소방사	129		25	3	5		5		4		20	3	24	17	12	4			3	4
남성	81		19	2	3		4		3				20	15	9			3	3	
여성	21		6	1	2		1		1				4	2	3					1
양성	27										20	3				4				
소방정(기관사)	5										2			1	2					
소방사	5										2			1	2					
남성	3													1	2					
양성	2										2									
소방정(항해사)	6										2			1	2					1
소방사	6										2			1	2					1
남성	3													1	2					
양성	3										2									1
심리상담	6					1					2			1					2	
소방사	6					1					2			1					2	
양성	6					1					2			1					2	
안전관리(가스)	1													1						
소방사	1													1						
남성	1													1						
안전관리(예방)	2											2								
소방사	2											2								
양성	2											2								
안전관리(화재조사)	4		4																	
소방사	4		4																	
양성	4		4																	
언론공보(콘텐츠제작)	1													1						
소방사	1													1						
양성	1													1						
언론공보(홍보)	1													1						
소방사	1													1						
양성	1													1						
의무소방전역	16											4	12							
소방사	16											4	12							
남성	16											4	12							
자동차운전	75						6				15	5	12	30		4	3			
소방사	75						6				15	5	12	30		4	3			
남성	44						6					5		30			3			
양성	31										15		12			4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동차정비	26		2	3				1			10			4	1	2	1		2	
소방사	26		2	3				1			10			4	1	2	1		2	
남성	10			3				1						4	1		1			
양성	16		2							10						2			2	
전기	19		1					2			5			1	2	6			2	
소방사	11							2						1		6			2	
양성	11							2						1		6			2	
소방교	6		1							5										
양성	6		1							5										
소방장	2														2					
양성	2														2					
정보통신	30			2							6	1	9		2	6			3	1
소방사	30			2							6	1	9		2	6			3	1
남성	7												7							
여성	2												2							
양성	21			2						6	1				2	6			3	1
정보통신(빅데이터)	2														2					
소방사	2														2					
양성	2														2					
항공(운항관제)	3		1		1							1								
소방교	3		1		1							1								
양성	3		1		1							1								
항공(정비)	9				1	1	1					3	1		1			1		
소방장	9				1	1	1					3	1		1			1		
남성	5				1	1	1						1		1					
양성	4											3						1		
항공(조종)	28			2	2	2	1				3	6				2	5	3	2	
소방위	28			2	2	2	1				3	6				2	5	3	2	
남성	16			2	2	2	1									2	5		2	
양성	12										3	6						3		
화학	33	10	5				1				5				4	6			2	
소방사	25	10	5				1								1	6			2	
남성	17	10	5				1								1					
양성	8															6			2	
소방교	5									5										
양성	5									5										
소방장	3														3					
양성	3														3					
회계	1														1					
소방사	1														1					
양성	1														1					

2

시험일정

단계	시험절차	공고일 / 공고기관	시험예정일	합격발표일
원서접수: 2. 24.(목) 10:00 ~ 3. 3.(목) 18:00 ※ 응시원서는 http://119gosi.kr 에 접수하시고, 원서접수 취소는 3. 7.(월) 18시까지 가능합니다.				
1단계	필기시험	3. 24.(목)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4. 9.(토)	5. 9.(월) / 소방청
2단계	체력시험	5. 9.(월)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5. 10.(화) ~ 6. 10.(금)	6. 15.(수) / 소방청
3단계	인·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	6. 15.(수) /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6. 15.(수) ~ 7. 15.(금)	최종합격자 발표 시 반영
4단계	면접시험			7. 29.(금) / 소방청
▶ 시험단계별 세부 내용 및 시험일정 변경사항은 119고시 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확인 ▶ 강원도 자동차운전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 추가 시행(별도 공고 예정)				

3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¹⁾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7.15.)
	운전면허 ²⁾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가점 등(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전일
	응시연령	2022년도 기준(다. 응시연령 참고, 페이지 7)
경채	응시연령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7.15.)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 예정일(필기시험일)
1) 나. 응시 결격사유(페이지 7)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2)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 요건이 되는 운전면허·자격(증) 효력은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면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됨		
▶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에는 연기·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에는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나. 응시 결격사유 및 복수국적자 임용 등

- 1)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의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참고 1】**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참고 2】**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④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2) 복수국적자 임용 **【참고 1】**

- 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③ 「국적법」 제11조의2제2항(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복수국적자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교육기관 입교 전까지 시험에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제출하여야 함(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다. 응시연령

분야별	계급	연령	생년월일
공채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2004. 12. 31. ~ 1981. 1. 1.
경채	소방사·소방교·소방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2002. 12. 31. ~ 1981. 1. 1.
	소방위·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 12. 31. ~ 1981. 1. 1.
경채	소방장(항공정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99. 12. 31. ~ 1981. 1. 1.
(항공분야)	소방위(항공조종)	23세 이상 45세 이하	1999. 12. 31. ~ 1976. 1. 1.

▷ 다음의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따라 복무를 마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의2에 따라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을 연장(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1)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4】**
- 2) 불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참고 4-1】**

- ▶ 소방청장이 지정한 종합병원 **【참고 4-2】** 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서식 7】** 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합니다.

마. 운전면허요건

- 1) 공채분야 응시자와 경채분야 중 소방장 이하 응시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2) 필기시험일까지 보유해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4 채용시험 가점

가. 대상자 및 비율 ※ 가점 관련 관계 법령 개정 시행 시에는 최신법령 적용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고
공채 경채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¹⁾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²⁾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채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필기시험 만 적용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공채시험에 한함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사무관리 소지자 ³⁾	과목별 만점의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2) 「국가공무원법」 제36조(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6(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나. 가점 적용

- 1)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2) 자격증(면허증)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의 점수 가점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 3)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 인정하며 정지, 취소, 기간만료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불인정

※ 원서접수 이후 가점 추가 등록 방법

- (기한/방법) 필기시험 전일(4. 8.) 18:00까지 / 119고시 누리집 로그인 후 가점 등록

II. 원서접수

1 접수방법 및 수수료

가. 접수방법: 119고시

- 1) 접수기간: 2. 24.(목) 10:00 ~ 3. 3.(목) 18:00
↳ 취소기한은 3. 7.(월) 18시까지(주말·공휴일 취소 가능)
- 2)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3) 원서접수 시 임용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응시
※ 거주지(주민등록상) 제한은 없으나 응시지역과 응시분야는 중복접수 불가
- 4)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5)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6)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 7)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나.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소방사, 소방교	5,000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7,000원

- 1) 원서접수 취소기한 내에 접수를 취소한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시 추가 비용 발생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사실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

다.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1) 반명함(3cm×4cm), 사진 파일(JPG, GIF, PNG, DMP), 해상도(100DPI 이상)
※ 사진파일 확장자가 다르면 화면 출력 및 인쇄 시 보이지 않음

2)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 등록 시 불이익 발생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동물·식물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3) 채용시험 단계마다 같은 사진을 사용하므로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사진 교체 불가

라.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는 것에 반드시 동의할 것 **【서식 10】**

2)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된 사항을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 수정은 불가함

3)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운전면허 미취득자는 원서접수 시 '취득 예정' 선택

※ 예시: 1종 보통 이상 ① 취득자 ② 취득예정자

<원서접수 시 준비사항>

- (공 통) ① 사진

- (해당자) ②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록증 ③ 자격증(면허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사본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4) 발급받은 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 자격 명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검증 사이트: 큐넷(www.q-net.or.kr/☎1644-8000)

5)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에서 확인하고,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

※ 인터넷: 정부24(www.gov.kr)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

6)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결과 공개

가. 일 시: **3. 10.(목) 14:00** / 119고시

나. 내 용: 지역별, 분야별 경쟁률(공채, 경채)

Ⅲ. 시험절차

1 1단계: 필기시험

가. 장 소: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1) 응시표 출력: 3. 24.(목) 14:00 ~ / 119고시→마이페이지→응시표 출력

2)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나. 배 점: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1선택형

다. 시험과목: 공채 5과목 / 경채 3과목

채용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공채	10:00 ~ 11:40 (100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경채	10:00 ~ 11:00 (60분)	일반	소방사(3):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소방장(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 (소방사)	소방관련학과(3):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 5과목으로 변경되어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에 따른 조정점수 적용 폐지

라. 출제범위

과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1 【참고 7】	
생활영어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경채, 소방사)	
소방관계 법규	공채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채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마. 출제문제 공개 및 문제문의

1) 문제지 및 가(정) 답안 공개: 4. 9.(토) 16:00 / 119고시

2) 문제문의

가) 기간: 4. 9.(토) 16:00 ~ 4. 10.(일) 24:00

※ 기간이 경과한 후 문제문의는 불가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방법: 119고시에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제출 **【서식 5】** ※ 시험 응시자만 가능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문제문의 → 문제문의서 첨부)

다) 내용: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바. 필기시험 점수(원점수, 가점) 공개 및 이의제기

1) 필기점수 공개: '22. 4. 29.(금) 14:00 ~ '23. 4. 28.(금)

2) 이의제기

가) 기 간: 4. 29.(금) 14:00 ~ 5. 2.(월) 18:00

나) 방 법: 119고시에서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 및 가점 조회

다) 이의제기: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점수 문의(이의제기) → 글쓰기 →
(분류) 응시지역 선택 → 제목 작성 → 점수 이의제기 서식 작성 → 저장

점수 이의제기 서식	(지역명) 점수 이의신청
	1. 응시번호 / 2. 응시자 성명
	3. 사전 공개점수(A과목 80, B과목 60, C과목 70, D과목 60, E과목 50, 가점 00)
	4. 본인 채점점수(A과목 85, B과목 65, C과목 75, D과목 65, E과목 55, 가점 00)

3) 이의제기 답변: 5. 4.(수)까지

사. 합격자 결정

1)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아래의 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분야	공채		경채	
	선발예정인원	배수	선발예정인원	배수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1~10명	3배수	1명	3명
			2명	6명
	11~20명	2.5배수	3명	8명
			4명	9명
	21~50명	2배수	5명	10명
			6~50명	1.8배수
	51명 이상	1.5배수	51명 이상	1.5배수

2)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인원은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함

3)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으면 해당 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가. 일시/장소: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 나. 대 상 자: 필기시험 합격자(경채분야는 해당자)
- 다. 시험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라. 평가배점: 총점 60점(종목별 10점 만점) **【참고 8】**
- 마.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4 적용 **【참고 8-1】**
- 바. 이의제기: 시험관리위원회 개최 후 결정
- 사. 합격자 결정: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아. 도핑테스트

- 1) 대상자는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5%(소수점 절사)에서 무작위 선정
- 2) 도핑테스트 동의서 **【서식 9】** 는 체력시험 응시자 등록 시 징구
- 3) 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조치 **【참고 2】** 또는 면책신청 가능
- 4) 도핑테스트 안내문: **【참고 9】**
- 5)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참고 9-1】**
- 6) 응시자 치료목적 사용 면책신청서: **【서식 8】**

※ 이의제기 시에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치료목적 사용 면책위원회(3인 이상)를 운영하여 금지약물 면책 여부 결정

가.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1) 일시/장소: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 2) 대 상 자: 체력시험 합격자(체력시험이 없는 채용분야 응시자 포함)
 - 3) 서류제출: **【서식 3】**, **【서식 10】** 을 포함하여 자격·면허 증빙자료 제출(우편 또는 방문)
 - 4) 검사결과: 인·적성검사 자료는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제공
- ※ 서류 미제출자는 응시 포기로 간주

나. 신체검사

- 1) 제출일시: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 2) 대 상 자: 체력시험 합격자(체력시험이 없는 채용분야 응시자 포함)
- 3) 검사방법: 시·도 소방본부 안내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종합병원
【참고 4-2】 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기한 내 제출
- 4)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서식 7】**
- 5) 합격기준: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신체검사 유의사항

-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런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가 필요함
-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한 응시자는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 제출(다만 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 본부에서 별도로 제출 일자를 지정할 수 있음)
-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참고 4-4】**
- ▶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4 4단계: 면접시험

가. 장 소: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체력시험 합격자(서류 미제출자 제외)

다. 면접방법: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면접단계	평가요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 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 가능성	10점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 정신	10점

※ 코로나19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단면접 시행은 변경될 수 있음

라. 합격자 결정

- 1) 1단계(집단면접) 평가점수와 2단계(개별면접)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2) 다만 시험위원 과반수가 5개의 평가요소 중 1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로 평가한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함

가. 최종합격자 결정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 2)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채용 분야	시험종류	적용비율	비고
공채	필기+체력+면접	필기 75%+체력 15%+면접 10% (실기시험을 병행할 때는 이를 포함한 점수를 말한다)	
경채	면접시험	면접 100%	법무분야
	실기+면접시험	실기 75%+면접 25%	항공분야
	필기+체력+면접시험	필기 75%+체력 15%+면접 10%	건축분야 등
	필기+체력+실기+면접시험	필기 40%+체력 15%+실기 35%+면접 10%	강원 운전분야

나. 추가 합격자 결정

- 1)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 인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 임용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합격증명서 발급

- 1) 발급일자: 합격자 발표 이후
- 2) 발급대상: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
- 3) 발급방법: 119고시에서 직접 발급(출력)

IV. 세부 안내사항

1 공통사항

가.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인정 등 유의사항

- ▶ 인 정: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 불인정: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 사진
- ※ 응시표 출력 후 모든 시험절차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도 소방본부(응시번호별)에서 지정한 시험장소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공고된 시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예시)

-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2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0:01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 입구 기준: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출입구 기준
- ※ 지정시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불합격 처리)

라. 시험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 및 시·도 소방본부 누리집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및 공지사항(시험일시, 장소 등)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시험 일정이 긴급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바. 문자 안내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 물품 등 파손,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소지품 분실 등 시험장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 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 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면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채용분야	접수서류	접수대상	비고
공채	자격취득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가점보유자	원서접수 시
공채, 경채	취업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119고시에 등록

나. 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 **【참고 5, 5-1, 5-2】**

- 1) 원서접수 시 대형면허 소지자는 가점적용란에 대형면허 자격을 입력하여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원서접수 이후 가점을 취득한 자는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119 고시’ 누리집에 추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류 입력: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라.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절차마다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부터 접수하고 최종합격일에 마감함

- 1) 제출기간: 면접시험 ~ 최종합격
- 2) 제출서류: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 6】**
- 3)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팩스 제출 불가)
- 4) 제출장소: 본인이 응시한 시도 소방본부

마.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응시자 본인이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락처는 응시자 휴대전화 번호로 작성)

바. 시험실시권자는 잘못된 서류를 제출(파일 등록)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시험장소 및 시험실)에 착석하여 감독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시험장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 시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 전날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 시험장은 정문만 개방하고 출입 통제는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통과시간 기준입니다.
- ▶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을 지참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성적은 답안지 전산 판독 결과에 따르며, 답안지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라.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때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때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2)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판독 결과 등에 대한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채점오류(귀책 사유) 사례

- ▶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 ▶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 ▶ 답안지 여백 낙서, 훼손 등으로 채점 불가한 경우
- ▶ 예비표기 하여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이외 필기구(연필, 샤프, 적색펜 등) 사용한 경우
- ▶ 불량 또는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마킹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 ▶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훼손한 경우
- ▶ 수정테이프 사용 후 번짐, 뜯김 등이 발생한 경우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마.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2) (자필성명)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당해시험 무효 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필적감정용 기재란, 자필성명, 응시번호, 생년월일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모든 통신기기나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문제지 배부 후 발견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1)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산기기, 태블릿 PC 등
- 2) 통신장비를 소지한 응시자는 시험실시 전 전원을 끈(off) 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문제지 배부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 문제지 배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자는 문제지의 과목순서대로 답안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때도 답안지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할 때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답안지에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시험감독관 서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을 기재하지 않아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무효답안으로 처리합니다.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사례

-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무효 처리기준으로 공고한 행위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공고문에서 별도 시험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함**)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1. (대 상) **필기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진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된 응시자
- ③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④ 발열 또는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2. (신청기한) **2022. 4. 8.(금) 18:00까지**

※ '22. 4. 8.(금) 18:00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기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 ~ ③ 순차 실시

- ① 응시지원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자진신고
- ② 지자체 보건소에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통보
- ③ 제출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서식 11】**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2】**
- ③ (확진자) 의사 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통지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검사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코로나19 방역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 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나.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일반시험실 입실이 제한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 마스크는 KF94 등급 이상을 사용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착용
 -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개인 마스크를 착용 후 입장하시고, 분실 및 착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라.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사전에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확진 및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안내] 참고 **【안내 1~4】**

【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

- ▶ 신청대상: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본인이 신청한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 신청기간: '22. 4. 4.(월) 09:00 ~ 4. 8.(금) 18:00
- ▶ 신청장소: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시·도 공고문 참고)
- ▶ 서류제출: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 전자우편
- ▶ 신청서류: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의사소견서 또는 자가격리통지서

- 마. 모든 응시자는 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첨부)”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2】**

- 바.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지켜봐야 하며,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핸드링 등)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부정으로 합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참고 9】**

※ 체력시험 응시자 중 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 실시

다.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면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아닌 사람은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바. 체력시험 전 또는 실시 중에 응시자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을 연기하거나 추가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졌을 때 포함) 그 해당 종목에만 재 측정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시점은 시험 당일로 하며 시간은 시험본부에서 결정합니다.

사. 체력시험 중에는 판정관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면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가 인정됩니다.

아. 체력시험은 응시 중 바닥 미끄럼 등에 주의하시고 체력시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 보조용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장비 착용 등 시험 유의사항

- ▶ 스포츠 테이핑, 상처 보호용 밴드는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탄산마그네슘 가루, 붕대, 복대 등 보호대 사용 금지
- ▶ 악력, 배근력 종목에서는 시험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반 코팅 장갑 사용 가능
- ▶ 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복장(후드티 등) 및 용모(긴 손톱, 긴 머리)는 시험 운영과정에서 제재 예정
- 긴 머리는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체력측정 기기 등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것
- ▶ 물·음료는 개인 지참(물·음료 이외의 다른 액체류 제품은 섭취 금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2항제4호“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 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에 해당

자. 체력시험 장비 제조사, 종류 등은 시험 전에 공개하지 않으며, 체력 시험 세부 운영 방법(측정방법, 실격기준 등)은 시험 당일 응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 악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 ▶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차.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체력시험 중 촬영되는 동영상은 시험판정을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며 응시자에게는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 ▶ 종목별 측정 시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종목을 실시한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 판독 결과에 따라 이의제기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타.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시행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파. 체력시험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전 종목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합니다. (왕복오래달리기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

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 시험장 운영 안내】

1. (대 상) 체력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진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된 응시자
- ③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④ 발열 또는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2. (신청기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별도 공고

※ 공고된 기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력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 ~ ③ 순차 실시

- ① 응시지원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
- ② 지자체 보건소에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통보
- ③ 첨부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서식 11】**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2】**
- ③ (확진자) 의사 소견서
- ④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통지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검사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시험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까지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나. 소방청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후 결과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4-2, 4-3, 4-4】**
- ※ 약물검사(TBPE) 결과를 포함하지 않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검사서류는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식 7】**
-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반명함판(3cm×4cm) 컬러사진 1~2매(병원마다 다름), 신체검사 수수료(병원마다 다름)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콘택트렌즈나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바. 신체검사 결과는 전산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한 신체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력, 혈압, 시력은 반드시 수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계인 처리,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사.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된 사람은 서류전형 접수기간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전 시·도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밀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하며, 재검사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은 시·도 소방본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인·적성 검사 관련 검사일시, 검사장소, 검사방법, 준비물, 진행 방법 등은 시·도 소방본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모든 제출서류는 시행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가능)만 인정합니다. 거짓,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은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을 참고하십시오. **【참고 3】**
- 다.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당해 시험을 정지 및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라.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週)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산정, 비상근 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週)당 근무시간 명시), 직책, 담당업무, 상벌사항(징계기록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력증명 제출 시 포함될 서류

-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한 경력(사업주 포함)에 한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 ▶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경력증명서)
 - ②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증명 서류
 - ③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
 - ④ 급여계좌내역(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무기간 기준), 갑근세증명서
 - ⑤ 근로계약서(계약직경력자에 한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 ①, ②, ③, ④번은 본인의 근무경력 기간 모두 나오도록 발급

※ ④, ⑤번은 해당자만 제출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서식 2】** 제출(외국대학교 졸업자 포함)

마.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담당자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 40시간에 따름)한 경력을 말합니다. 시간제 근무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합니다.

사. 해산·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우면 근무경력사실 확인서 **【서식 1】**와 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증명' (Civilian Certificate). The sidebar on the left contains links to '민원증명' and '사실증명신청' (Factual Certificate Application).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section for '민원증명 이용시간' (Civilian Certificate Usage Time) and '민원증명 이용절차' (Civilian Certificate Usage Procedure). The '민원증명 신청' (Civilian Certificate Application) section on the right lists various services, including '소득금액증명' (Income Tax Return),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blue '2'.

<서류전형(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별도 공고(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나. 대 상 자: 체력시험 합격자(체력시험이 없는 채용분야 응시자 포함)

다.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경력 등)가 적합한 자

채용분야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공채, 경채)		필수	·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 주민번호 13자리 포함 발급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기타	· 군복무확인서(전역일 표기) 1부	· 사진,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군복무 중인 자에 한함					
			· 의사상자 등록증 1부	·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1부	· 의사상자에 한함		
			·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 증명서 中 1부	· 졸업자(2~4년제)		
		소방관련학과 【참고 6】		· 미졸업자(4년제)		
		의무소방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서 1부	·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서에 전역 예정일 명시		
		구조	· 군경력증명서 1부	· 계급별 임용일, 근무경력(부대), 징계, 교육 입교 기록 등 상세 기재		
		구조(수난)	·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증명서	· 각 시·도 본부 요청 시에 한함		
		법무	· 사법연수원 수료증 또는 변호사 면허증 1부			
경채	학력분야 (박·석·학사)		·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대학원 모두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만 제출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공공경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자격(2년)		필수	· 4대보험 가입증명서 中 1부	· 군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1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증명서 中 택 1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기타	· 갑근세증명서 또는 급여계좌내역서 1부		
				·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 폐업회사 경력증빙자료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 계약직 경력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 사업체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등				

- 제출서류 기준일: 공고일('22. 2. 18.) 이후 발급분 인정(신체검사서 제외)
-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가. 본인이 채용시험을 지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 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공고된 장소에서 등록한 후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등록 시간 종료 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다. 면접시험의 세부 운영 방법(집단면접 및 개별면접)은 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사전 교육을 합니다. 응시자의 부주의로 교육을 받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10】**
- 라. 시험장 물품의 파손·훼손 등의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해야 하며, 시험장 전체는 금연 구역으로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마.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바.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면접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면접시험 중 전자·통신장비 소지자(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 사.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응시자는 추가 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아.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서식 6】**와 주민등록초본을 면접시험 등록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 면접시험에 대리 시험을 의뢰·응시한 사람 등 부정행위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면접시험 중 운영요원 및 면접위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응시자(본인)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 시험장(비대면 면접시험) 운영 안내】

1. (대 상) **면접시험 응시자** 중 아래 사항의 하나 이상 해당되며 신청방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응시자

- 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통지를 받아 응시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②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검진키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이 발견된 응시자
- ③ 본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 ④ 발열 또는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확인되어 코로나19 PCR 검사가 진행 중인 응시자

2. (신청기간)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별도 공고

※ 공고된 기한까지 응시 신청서가 도착하지 않은 응시자는 응시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 ~ ③ 순차 실시

- ① 응시지원 시·도 소방본부 담당자
- ② 지자체 보건소에 본인이 시험 응시자임을 통보
- ③ 첨부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 ①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서식 11】**
-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 12】**
- ③ 격리통지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안내) 시험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6.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검사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최종합격자

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되면 합격 취소 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참고 2】**

V. 시·도 소방본부 연락처 및 주소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세종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호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12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1~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재개발팀	031-329-0321~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3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www.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13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www.sobang.kr/index.sko)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2 054-880-6155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 원서접수 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본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 및 119고시(www.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 -7287 ~ 7294
- ※ 원서접수기간 시스템오류 문의 콜센터: SE코리아, 070-4290-9611